

## 공 고 문

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- 712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.

2008년 11월 13일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- 다 음 -

1. 지정기간 : 2008년 12월 1일 ~ 2009년 11월 30일
2. 대상지역 :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, 부산·진해 경제자유구역 및 그 인접지역, 판교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,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 및 그 인접지역(다만, 2008년 12월 1일 현재 다른 공고 등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정내용에 따름)

구 분	대 상 지 역	면 적
합계		145.59km <sup>2</sup>
인천시	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연수구 송도동(498km <sup>2</sup> ), 서구 경서·원창동(0.15km <sup>2</sup> ) 일원	5.13km <sup>2</sup>
부산시	강서구 대저2·명지·봉림·송정·화전·녹산·생곡·구랑·지사·미음·범방·신호·동선·성북·늘차·천성·대항동	53.32km <sup>2</sup>

경상남도	진해시 성내·서중·남문·제덕·마천·소사·대장· 남양·두동·청안·안골·용원·가주동	41.52km <sup>2</sup>
경기도	성남시 수정구 시흥동·사송동, 분당구 판교· 삼평·백현·운중·하산운·대장·석운·궁내· 금곡·동원, 용인시 수지구 동천·고기동(29.69km <sup>2</sup> ), 수원시 광교·연무·우만·원천·이의동, 용인시 수지구 상현·성북·풍덕천·동천동, 기흥구 전체(15.93km <sup>2</sup> )	45.62km <sup>2</sup>

### 3.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180m <sup>2</sup> 초과
	상업지역	200m <sup>2</sup> 초과
	공업지역	660m <sup>2</sup> 초과
	녹지지역	100m <sup>2</sup>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90m <sup>2</sup> 초과
도시지역외의 지역	농지	500m <sup>2</sup> 초과
	임야	1,000m <sup>2</sup>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m <sup>2</sup> 초과